

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교복대리점 법 준수 안내사항

1. 개념 및 주요 유형

| 입찰담합의 개념

- **정의:** 사업자 간 낙찰자, 투찰가 등 입찰의 경쟁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
- **근거:**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

| 주요 위반 유형

- 낙찰 예정자의 사전결정
- 투찰가격 담합
-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(고의유찰 등)
- 학교물량 나눠먹기

2. 법 위반 시 제재 조치

| 행정·형사 제재

- **과징금:**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% 범위 내
- **형사처벌:** 법인·개인에 대한 고발 가능 (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)

| 기타 제재

-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(최장 2년)
- 시정조치(법위반행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 등)
- 발주처의 손해배상소송(손해액의 3배 이내)

3. 대리점 권고사항

| 부당한 요구의 거절

- **수평적 담합 거절:** 지역 내 타 대리점이 담합 요청 시 명시적 거부 의사 표명 필요
- **수직적 담합 거절:** 제조사(본사)의 특정 가격 투찰, 사전 물량배분 지시 등 담합교사가 있을 경우 명시적 거부 의사 표명 필요

| 사후 대응 및 신고

- 타 대리점, 제조사 등의 위법행위 확인 시 공정위 제보
 - * 국민신문고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 배너
- 이미 담합에 가담한 경우 자진신고도 가능
 - * 자진신고 시 과징금 및 고발 면제 가능